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15

발의연월일: 2024. 11. 4.

발 의 자: 강득구·김병주·박홍배

송재봉 · 윤후덕 · 이강일

이용우 · 전재수 · 정혜경

조 국·채현일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도시지역의 토지이용형태 등을 기반으로 시가지, 녹지 등으로 공간 유형을 구분하 고 각 공간의 생태적 특성, 동식물 현황 등을 조사·평가하여 가치를 등급화한 지도이며, 보호지역의 지정·관리, 개발행위 허가 기준, 도시 기본계획 수립, 환경계획 수립 등에 활용됨.

그런데, 현재 도시생태현황지도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작성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작성 및 제출 과정에 도지사가 배제되어 있어 도(道)에서는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검토·활용이 어렵고, 도에서 관할구역의 광역적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고자 하여도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도(道)지사도 도시생태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근거와 관할 시 (市)에서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도(道)지사의 검토를 거쳐 제출 하도록 절차를 추가하여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통일성 및 품질을 향상하고 광역적 활용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4항 중 "도시생태현황지도를"을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이 작성한 경우에는 도지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하면 시장에게 해당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도지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활용) ① 도지사는 관할 시 또는 군에 소재한 도시지역의 생태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 또는 군수(「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또는 군의 장을 각각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협의하여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한 경우 시장은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 ③ 도지사가 작성하는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 방법, 자료 제공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은 제34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지사"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지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도지사가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제3 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된 도시생태현황지도 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활용) ① ~ ③ (생 략)	작성·활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	4
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생태현	
<u>황지도를</u>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라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u>다만, 시장이 작성한 경우</u>
	에는 도지사를 거쳐 환경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
	사는 필요하면 시장에게 해당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수정・보
	<u>완을 요청할 수 있다.</u>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34조의3(도지사의 도시생태현
	<u>황지도의 작성·활용) ① 도지</u>
	사는 관할 시 또는 군에 소재
	한 도시지역의 생태현황을 파
	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
	당 시장 또는 군수(「지방자치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또는 군의 장을 각각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협

- 의하여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도 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한 경우 시장은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한 것 으로 본다.
- ③ 도지사가 작성하는 도시생 태현황지도의 작성 방법, 자료 제공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은 제34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 한다. 이 경우 "도시생태현황지 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지사"로 본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현 황지도의 작성・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